

배포일시	2021. 11. 24.(수) 조간 * 인터넷 2021. 11. 23.(화) 12:00 이후 / 총 5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과 장 양현수 사무관 이철호	044-202-8901 044-202-8904
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	단 장 김형석 차 장 이중곤	052-703-0611 052-703-061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·제조업 점검(7~10월, 8차례) 결과 발표 - 11.24.(수) 제10차 '현장점검의 날'을 맞아 일제점검 -

- ☐ 20,000여 개의 중소규모 건설·제조업 일제점검 실시,
건설현장은 68%, 제조업은 55%가 여전히 안전조치 미비
 - 1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위반 비율 증가*
 - * (7~8월 대비 9~10월) ▲3억 원 미만 6.0%p 증가, ▲3억~10억 원 미만 2.1%p 증가, ▲10인 미만 2.6%p 증가
- ☐ '현장점검의 날'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집중할 계획,
'폐기물 처리업', '지붕개량공사', '벌목작업'도 지속 관리 방침
 - *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」 개정을 통해 '벌목작업'에 대한 위험방지 강화('21.11.19. 시행)

- ☐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* 「3대 안전조치** 현장점검의 날」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.

* (점검일정) ▲7.14.(수), ▲7.28.(수), ▲8.13.(금), ▲8.25.(수), ▲9.8.(수), ▲9.29.(수), ▲10.13.(수), ▲10.27.(수)
(점검인원)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누적 11,600여 명(2인 1조, 5,900개 팀)

** (3대 안전조치) ①추락사고 예방수칙, ②끼임사고 예방수칙, ③개인보호구 착용

- 전국 20,487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3,202개소(64.4%)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.

[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(7~10월, 8차례)]

7~10월 (8회)	총계	건설업				제조업					기타 업종*	별목 작업
		소계	3억 미만	3억~ 10억	10억 이상	소계	10인 미만	10인 ~ 29인	30인 ~ 49인	50인 이상		
점검대상(개소)	20,487	14,567	3,829	5,816	4,923	5,387	2,138	2,265	571	413	504	29
위반현황(개소)	13,202	9,923	2,543	4,244	3,136	3,006	1,121	1,412	320	153	268	5
위반비율(%)	64.4	68.1	66.4	73.0	63.7	55.8	52.4	62.3	56.0	37.0	53.2	17.2

* (기타 업종) 조선업, 철강업, 폐기물 처리업 등

** 위반비율=(위반사업장÷점검사업장) ×100

□ 업종별로는 건설업(68.1%)이 제조업(55.8%)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.3%P 높았고,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(28.6%)이 제조업(10.7%)보다 17.9%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(41.2%)가,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·울 등 방호조치 불량(24.3%)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.

* (위반비율) ▲건설업은 ①안전난간 미설치(41.2%), ②작업발판 미설치(15.9%), ③개구부 덮개 미설치(6.1%) 순, ▲제조업은 ①덮개·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(24.3%), ②지게차 안전조치 미비(14.2%), ③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(14.1%) 순

□ 7~8월(4차례)과 9~10월(4차례)의 ‘현장점검의 날’ 운영 결과를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

[현장점검의 날 결과 비교(7~8월 대비 9~10월)]

위반비율 증감현황 (%)	총계	건설				제조					폐기물 처리	별목 작업
		소계	3억 미만	3억~ 10억	10억 이상	소계	10인 미만	10인 ~ 29인	30인 ~ 49인	50인 이상		
7~8월(4회)	64.5	67.5	64.2	72.2	63.7	58.1	51.6	65.5	57.6	49.0	69.0	-
9~10월(4회)	64.2	70.0	70.2	74.3	63.7	50.8	54.2	54.5	53.5	17.7	47.1	17.2
증감(%P)	-0.3	+2.5	+6.0	+2.1	-	-7.3	+2.6	-11.0	-4.1	-31.3	-21.9	비교 불가

○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,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*했다.

* (증감 현황) ▲3억 원 미만 6.0%P 증가, ▲3억~10억 원 미만 2.1%P 증가, ▲10인 미만 2.6%P 증가

-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'22.1.27.부터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큰 폭의 감소 (21.9%P, 31.3%P)세가 나타났다.
-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그간 8차례의 ‘현장점검의 날’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”라고 하면서
 - “‘현장점검의 날’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·관리하면서, ‘10분 현장안전교육’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”이라고 했다.
- 한편 고용노동부는 11.24. ‘제10회 현장점검의 날’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 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·제조업, 폐기물 처리업,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별목작업에 집중한다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(별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)	제1항	사업주는 별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유압식 별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
	1호	별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
	2호 (개정)	별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·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, 뿌리 부분 지름의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
	3호 (신설)	별목작업과 인접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별목하려는 나무를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
	4호 (신설)	걸려 있는 나무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별목하거나 걸린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할 것

붙임 현장점검의 날 운영 실적(7~10월) 1부. 끝.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사무관(☎044-202-8904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□ 업종별 세부 위반현황

7~10월 (8회)	총계	건설				제조					기타 업종*	별목 작업
		소계	3억 미만	3억~ 10억	10억 이상	소계	10인 미만	10인 ~ 29인	30인 ~ 49인	50인 이상		
점검대상(개소)	20,487	14,567	3,829	5,816	4,923	5,387	2,138	2,265	571	413	504	29
위반현황(개소)	13,202	9,923	2,543	4,244	3,136	3,006	1,121	1,412	320	153	268	5
위반비율(%)	64.4	68.1	66.4	73.0	63.7	55.8	52.4	62.3	56.0	37.0	53.2	17.2

건설업 (7~10월)	점검 사업장	위반 사업장	위반현황 (단위: 건)							
			계	작업 발판	안전 난간	개구부 덮개	방망· 안전대	지붕· 낙방 조치	달비계 안전 조치	개인 보호구
계	14,567	9,923	29,032	4,616	11,970	1,785	1,631	623	106	8,301
			100%	15.9%	41.2%	6.1%	5.6%	2.1%	0.4%	28.6%
3억 미만	3,829	2,543	7,296	1,283	2,766	255	363	222	34	2,373
			100%	17.6%	37.9%	3.5%	5.0%	3.0%	0.5%	32.5%
3억~10억	5,815	4,244	12,829	1,960	5,310	821	651	236	48	3,803
			100%	15.3%	41.4%	6.4%	5.1%	1.8%	0.4%	29.6%
10억 이상	4,923	3,136	8,907	1,373	3,894	709	617	165	24	2,125
			100%	15.4%	43.7%	8.0%	6.9%	1.9%	0.3%	23.9%

제조업 (7~10월)	점검 사업장	위반 사업장	위반현황(단위:건수)									
			계	방호 장치 및 인 검 사	방호 장치 유지	방호 장치 해체	방호 장치 (덮개· 울)	동력 장치	정비 조 절 수	기 구 이 상 조 절 차	지 게 차	개인 보호구
계	5,387	3,006	7,799	1,103	705	985	1,899	292	505	363	1,109	838
			100%	14.1%	9.0%	12.6%	24.3%	3.7%	6.5%	4.7%	14.2%	10.7%
10인 미만	2,019	1,121	2,489	370	211	313	611	59	141	92	356	336
			100%	14.9%	8.5%	12.6%	24.5%	2.4%	5.7%	3.7%	14.3%	13.5%
10인~ 29인	2,384	1,412	3,882	540	368	467	956	129	266	204	578	374
			100%	13.5%	9.2%	11.7%	24.0%	3.2%	6.7%	5.1%	14.5%	9.4%
30인~ 49인	571	320	993	118	83	167	228	76	56	46	134	85
			100%	11.9%	8.4%	16.8%	23.0%	7.7%	5.6%	4.6%	13.5%	8.6%
50인 이상	413	153	435	75	43	38	104	28	42	21	41	43
			100%	17.2%	9.9%	8.7%	23.9%	6.4%	9.7%	4.8%	9.4%	9.9%

□ 위반현황 및 비율

- 7~8월 대비 9~10월,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은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 각각 증가*

* (증가 현황) ▲3억 원 미만 6.0%P 증가, ▲3억~10억 원 미만 2.1%P 증가, ▲10인 미만 2.6%P 증가

위반비율 증감현황	총계	건설				제조					폐기물 처리	별목 작업
		소계	3억 미만	3억~ 10억	10억 이상	소계	10인 미만	10인 ~ 29인	30인 ~ 49인	50인 이상		
7~8월(4회)	64.5	67.5	64.2	72.2	63.7	58.1	51.6	65.5	57.6	49.0	69.0	-
9~10월(4회)	64.2	70.0	70.2	74.3	63.7	50.8	54.2	54.5	53.5	17.7	47.1	17.2
증감(%P)	-0.3	+2.5	+6.0	+2.1	-	-7.3	+2.6	-11.0	-4.1	-31.3	-21.9	비교 불가

7~8월 (4회)	총계	건설				제조					기타 업종*
		소계	3억 미만	3억~ 10억	10억 이상	소계	10인 미만	10인~ 29인	30인~ 49인	50인 이상	
점검대상(개소)	12,381	8,472	2,400	3,642	2,431	3,685	1,461	1,615	354	255	224
위반현황(개소)	7,995	5,718	1,540	2,629	1,549	2,141	754	1,058	204	125	136
위반비율(%)**	64.5	67.5	64.2	72.2	63.7	58.1	51.6	65.5	57.6	49.0	60.7

* (기타업종) 조선업, 철강업, 폐기물 처리업 등

** 위반비율=(위반사업장÷점검사업장) ×100

9~10월 (4회)	총계	건설				제조					폐기물 처리	별목 작업
		소계	3억 미만	3억~ 10억	10억 이상	소계	10인 미만	10인 ~ 29인	30인 ~ 49인	50인 이상		
점검대상(개소)	8,106	6,095	1,429	2,174	2,492	1,702	677	650	217	158	280	29
위반현황(개소)	5,207	4,205	1,003	1,615	1,587	865	367	354	116	28	132	5
위반비율(%)	64.2	70.0	70.2	74.3	63.7	50.8	54.2	54.5	53.5	17.7	47.1	17.2

⇒ ‘현장점검의 날’ 통해 연말까지 3대 안전조치* 정착 집중

*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집중 → 안내문 발송 병행